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

정성미(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)

⊙ 2013년 7월 명목임금은 4.5% 상승

- 2013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임금총액은 3,131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(2,996천 원) 4.5% 상승
-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(3,316천 원)은 전년동월대비 4.6% 상승하였는데, 이는 정액급여(4.5%)와 특별급여(7.1%)가 크게 증가하였고, 초과급여(-0.1%) 감소폭이 작은 영향
- 임시·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상승률은 6.3%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.3%p증가

⊙ 2013년 1~7월 명목임금은 4.2% 상승

- 근로자 1인당 월평균임금총액은 2012년 1~7월 대비 4.2% 상승한 3,076천 원을 기록
- 그러나 전년동평균 대비 1.8%p 감소한 수준
-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는 2012년 1~7월 대비 4.7%, 초과급여는 0.1%, 특별급여는 3.1% 상승한 영향으로 임금총액은 4.2% 상승한 3,255천 원을 기록
- 임시·일용근로자는 2012년 1~7월 대비 7.1% 상승한 1,374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하였고, 이는 전년동평균대비1.4%p 감소한 수준

⊙ 2013년 7월 실질임금은 3.0% 상승

- 2013년 1~7월 실질임금은 2.9% 상승

〈표 1〉 임금관련 주요 지표 동향(5인 이상 사업체 기준)

(단위 : 천 원, 2010=100.0, %)

		2010	2011	2012	2013			
					1~7월	7월	1~7월	7월
전체 근로자 임금총액		2,816 (6.8)	2,844 (1.0)	2,995 (5.3)	2,951 (6.0)	2,996 (3.4)	3,076 (4.2)	3,131 (4.5)
상용 근로자	임금총액	3,047 (6.4)	3,019 (-0.9)	3,178 (5.3)	3,125 (5.9)	3,169 (2.9)	3,255 (4.2)	3,316 (4.6)
	정액급여	2,234 (4.5)	2,341 (4.8)	2,470 (5.5)	2,449 (5.7)	2,475 (5.6)	2,564 (4.7)	2,586 (4.5)
	초과급여	196 (12.2)	179 (-8.4)	181 (1.0)	182 (3.1)	181 (-0.6)	182 (0.1)	181 (-0.1)
	특별급여	617 (12.3)	498 (-19.3)	527 (5.8)	494 (7.8)	513 (-7.2)	509 (3.1)	549 (7.1)
임시·일용근로자 임금총액		1,056 (-1.6)	1,215 (15.1)	1,293 (6.4)	1,283 (8.5)	1,304 (5.0)	1,374 (7.1)	1,386 (6.3)
소비자물가지수		100.0 (2.9)	104.0 (4.0)	106.3 (2.2)	106.0 (2.7)	105.9 (1.5)	107.4 (1.3)	107.4 (1.4)
실질임금증가율		3.8	-2.9	3.1	3.2	1.8	2.9	3.0

주 : 1) ( )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.
2) 1~7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.
3) 초과급여는 연장(야근근로 포함)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이고 특별급여는 상여금, 성과급, 임금인상소급분,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를 말함.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은행, http://ecos.bok.or.kr/

[그림 1] 임금관련 주요 지표 동향(5인 이상 사업체 기준)

(단위 : 천 원, %, 2010=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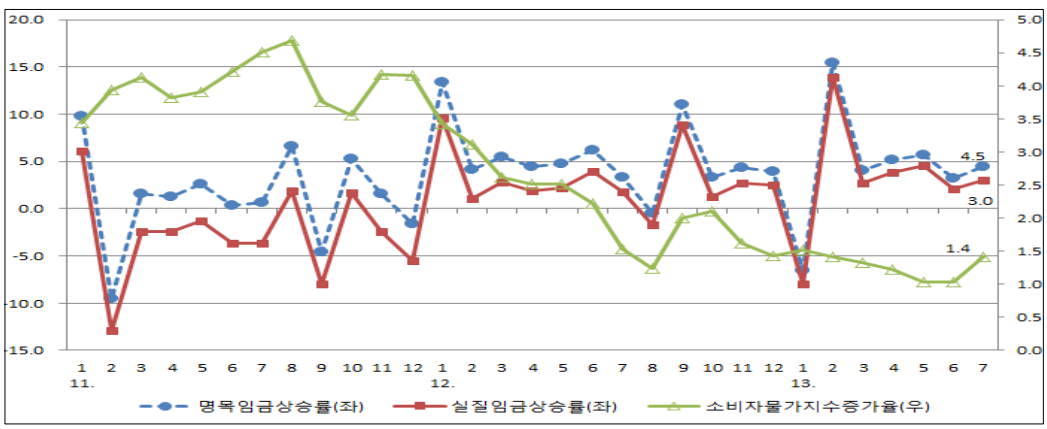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⊙ 2013년 9월 협약임금 인상률은 3.6%

– 2013년 9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3.6%로 2012년 9월 인상률(5.0%)에 비해 1.4%p 하락

[그림 2]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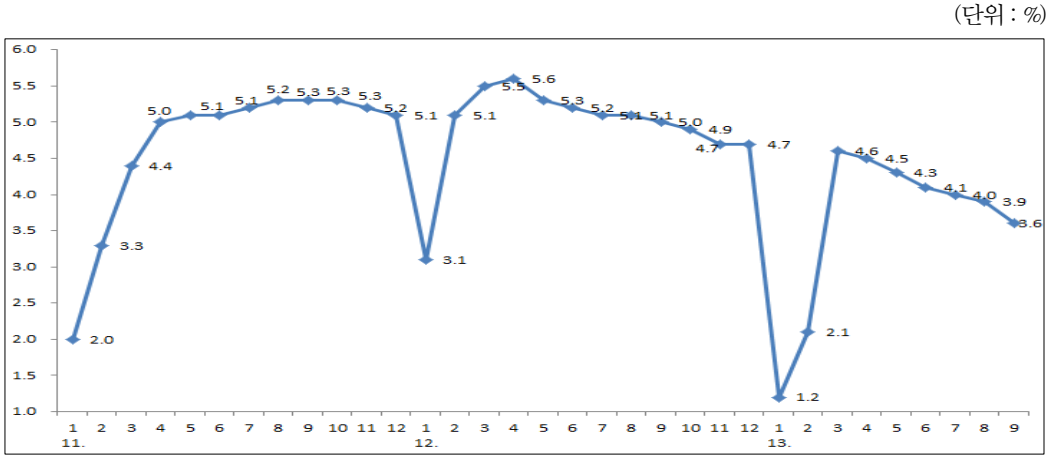

주 : 1)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,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.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.

2)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.

자료 : 고용노동부 e-나라지표, www.index.go.kr

⊙ 2013년 7월 근로시간 2.5% 증가

- 2013년 7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85.0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월(180.4시간)에 비해 4.6시간(2.5%) 증가

  ※ 월력상 근로일수가 2012년 7월 대비 1일 많은 영향으로 근로시간이 증가

-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91.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.9% 증가하였고,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28.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.6% 증가

⊙ 2013년 1~7월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0.5% 감소

- 2013년 1~7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4.4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평균(175.2시간)에 비해 0.8시간(-0.5%) 감소
- 전년동평균대비 월평균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가 1일 많았음에도 월평균 근로시간은 0.8시간 감소
- 2013년 1~7월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79.7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.6% 감소한 반면,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24.4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2.6% 증가
- 근로시간 감소 추세는 주로 상용총근로시간 감소에 기인해 비상용근로시간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됨

〈표 2〉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

(단위 : 시간, %)

	2011	2012	2013			
			1~7월	7월	1~7월	7월
전체 근로시간	176.3 (-0.2)	174.3 (-1.1)	175.2 (-0.2)	180.4 (0.8)	174.4 (-0.5)	185.0 (2.5)
상용총근로시간	182.1 (-1.4)	179.9 (-1.2)	180.8 (-0.3)	185.7 (0.6)	179.7 (-0.6)	191.0 (2.9)
상용소정실근로시간	168.5 (0.1)	167.2 (-0.8)	167.8 (-0.1)	173.2 (1.4)	167.4 (-0.2)	178.7 (3.2)
상용초과근로시간	13.6 (-17.1)	12.8 (-5.9)	13.0 (-3.0)	12.5 (-9.4)	12.3 (-5.4)	12.3 (-1.6)
비상용근로시간	122.5 (6.2)	122.3 (-0.2)	121.2 (-0.4)	128.0 (-0.2)	124.4 (2.6)	128.8 (0.6)

주 : 1)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.
2) 1~7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.
3) ( )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.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⊙ 2013년 1~7월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 감소세 지속

- 2013년 1~7월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2010년 1~7월 이후 하락 추세를 지속(그림 3 좌측 참조)
- 한편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2010년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하였지만, 여전히 금2008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(그림 3 우측 참조)

[그림 3] 1~7월 월평균 상용총근로시간(좌)과 비상용총근로시간(우)

(단위 : 시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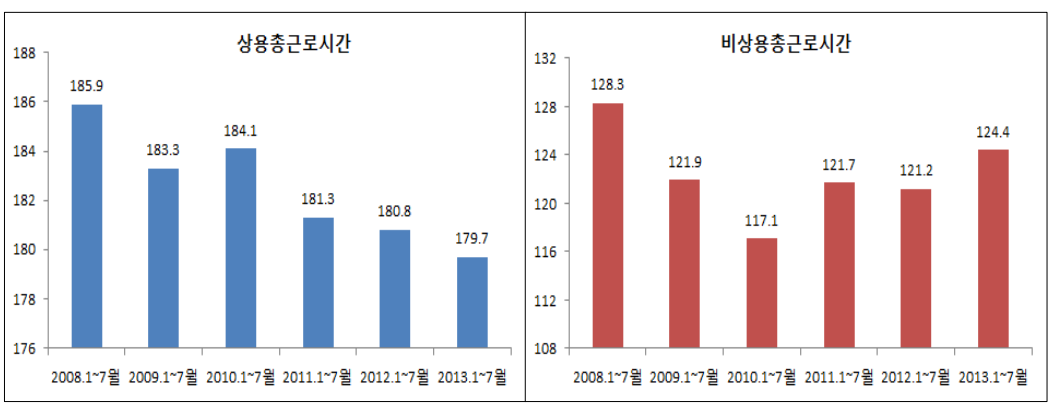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⊙ 2013년 1~7월 산업별 임금은 숙박 및 음식점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증가

- 근로시간 상승효과가 반영된 건설업(7.2%)에서 크게 상승
- 그 외 여가관련 서비스업(6.4%), 사업서비스업(6.0%), 운수업(5.9%), 교육서비스업(5.8%), 제조업(5.2%) 등에서 두드러지게 상승
- 대체로 근로시간이 상승한 산업의 임금상승률이 큼

⊙ 2013년 1~7월 산업별 근로시간은 건설업, 도소매업, 금융 및 보험업, 사업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

〈표 3〉 1~7월 월평균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동향(5인 이상 사업체 기준)

(단위 : 천 원, 시간, %)

	2012년 1~7월		2013년 1~7월	
	임금	근로시간	임금	근로시간
전 산업	2,951 (6.0)	175.2 (-0.2)	3,076 (4.2)	174.4 (-0.5)
광업	3,535 (6.6)	186.4 (0.1)	3,617 (2.3)	182.3 (-2.2)
제조업	3,155 (7.0)	187.8 (-1.4)	3,318 (5.2)	186.5 (-0.7)
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	5,114 (-0.4)	176.1 (0.1)	5,288 (3.4)	175.6 (-0.3)
하수·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	2,562 (6.6)	185.7 (0.2)	2,676 (4.4)	183.9 (-1.0)
건설업	2,255 (3.9)	151.5 (-1.8)	2,416 (7.2)	155.6 (2.7)
도매 및 소매업	3,042 (7.2)	174.7 (0.2)	3,113 (2.3)	175.1 (0.2)
운수업	2,531 (9.0)	182.5 (2.0)	2,681 (5.9)	179.0 (-1.9)
숙박 및 음식점업	1,730 (6.4)	188.6 (1.0)	1,726 (-0.2)	176.0 (-6.7)
출판·영상·방송통신서비스업	3,840 (4.6)	164.3 (0.4)	3,970 (3.4)	164.7 (0.2)
금융 및 보험업	5,037 (5.1)	163.9 (1.3)	5,120 (1.7)	164.7 (0.5)
부동산업 및 임대업	2,200 (10.4)	195.2 (0.8)	2,258 (2.6)	193.7 (-0.8)
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	3,958 (7.2)	165.9 (0.7)	4,086 (3.2)	165.7 (-0.1)
사업서비스업	1,753 (5.8)	173.5 (2.6)	1,858 (6.0)	173.6 (0.1)
교육서비스업	3,163 (4.3)	152.4 (0.4)	3,348 (5.8)	152.0 (-0.3)
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	2,581 (6.1)	175.0 (1.7)	2,644 (2.4)	174.1 (-0.5)
여가관련 서비스업	2,168 (3.4)	157.6 (0.7)	2,307 (6.4)	158.6 (0.6)
협회·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	2,198 (2.1)	170.0 (-2.8)	2,210 (0.6)	169.4 (-0.4)

주 : 1) ( )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.
2) 1~7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.
3) 초과급여는 연장(야근근로 포함)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이고 특별급여는 상여금, 성과급, 임금인상소급분,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를 말함.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은행, http://ecos.bok.or.kr/